**전자투표 이용 개인정보(휴대폰번호) 관련 법률검토 답변 (인터넷진흥원, 2016.2.19)**

1. **질의내용**

ㅇ 제목 :  투표서비스 이용을 위한 핸드폰 번호에 관련된 규제 기준 해석

ㅇ 내용

**[질의배경]**

- kt는 중앙선관위(국가기관) 및 핸디소프트와 협정을 맺고 온라인 전자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www.kvoting.go.kr](http://www.kvoting.go.kr))

※ 공정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선관위가 설계하고 KT가 HW시스템을 제공, 핸디소트프가 프로그램을 운영 및 투표업무지원

-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을 고려중인 한국교총(회원교사 17만명)에서 회원의 핸드폰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

※ 한국교총 선거담당자가 투표시스템 ID를 부여 받아 본인이 직접 핸드폰 번호를 시스템에 일괄입력 처리하고 투표 종료 7일 후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삭제

**[질의내용]**

1. 본 건 처럼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 투표에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규제대상이 된다면 중앙 선관위와 같은 국가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예외 기관으로 간주 되는게 아닌지(법령 조항이 있지 않은지)
3. 해당 단체에서 회원의 휴대폰 번호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올리고 KT는 단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만 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 취급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각 회원의 휴대폰 번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취급위탁, 제3자제공 등)
5. **인터넷진흥원 답변 결과(2.19)**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온라인투표서비스 사용을 위한 핸드폰 번호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 투표에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인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문의하신 ‘휴대폰 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 투표에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2] 규제대상이 된다면 중앙선관위와 같은 국가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예외 기관으로 간주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적인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을 특정 목적이나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영리.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며,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동창회..동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포함되고, 개인에는 1인 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국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예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해당 단체에서 회원의 휴대폰 번호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올리고 KT는 단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만 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 취급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취급위탁, 제3자제공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먼저,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다릅니다.

즉,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중앙선관위와 한국교총은 위.수탁 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관계는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양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한국교총은 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에 있어 귀사는 중앙선관위의 수탁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가 한국교총과 맺는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한국교총이 위.수탁 관계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은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①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②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 내용은 귀 기관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답변으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국번없이) 118

-담당자 이메일 : 118@kisa.or.kr